

2017년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.

- 과세 기준일 : 2017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
- 납부 기간 : 2017. 12. 16. ~ 2017. 12. 31.
- 과세 대상 : 자동차, 기계장비, 이륜자동차(125cc이상)
- 차령에 의한 차등 부과 실시
 - 승용자동차는 신규등록일 이후 3년째부터 매년 5%씩 최대 50%까지 경감하여 부과
 - ※ 납세고지서상 과세대상 차량 경감을 표기 (승용자동차)
- 납부 장소 : 전국 모든 금융기관
- 자동이체 신청자 : 2018. 1월 2일에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처리 되오니 통장잔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
- 자동차세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시 군청 세무회계과 (☎ 430 - 3465) 및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